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에 의거 '20.4월 조성 예정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사업개요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운영인력	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DDP 내 (2020년 DDP에 설치예정인 'UD 스마트 유니랩'과의 공간 및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실행력 확보)	67㎡	5명	2020.4월 ~ 2023.3월 (3년)

- 위탁기간 : 3년(2020. 4. ~ 2023. 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1,190백만원
 - 사업비 900백만원, 운영비·인건비 290백만원
 - ※ '19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준비 시범사업' 추진(600백만원)

다. 주요 위탁사무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 UD 현황 및 실태조사
 - UD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서울시 주요사업(공공공간, 시설물 등) 사전자문
 - UD 인증제클리닉 및 전시사업
 - UD 도시구현 관련 선도사업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
 - UD 교육 및 홍보 전시
 - UD 국내외 행사 개최 지원
 - UD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효과
 - 기 운영중인 민간조직의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인력 추가채용 및 인건비 별도 확보 등 사업추진상 행정·재정적 부담 절감 가능

-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민간확산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비효율 우려가 있는 직영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나. 예산조치 : 1,190백만원('20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합의 완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18.10.2.
- '20년 예산(안) 1,190백만원 : '19.10월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함영우 (☎ 2133-2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을 제거(높낮이차가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3. 장애인화장실의 최소면적은 4㎡이상으로 한다.
 4. 보도의 횡경사는 1/24이하로 한다.
 5. 보도의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① 가이드라인은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의 적극 참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3.28.>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8.3.22.,2019.5.1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3.22.>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717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